
문서번호 : 21-11-과거-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21. 11. 16.(화)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인권의학연구소, 고문가해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행정법원(제1부)은 2021. 11. 12. 오후 2시,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련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일부 승).
3. 이에 따라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가해자들의 명단과 서훈의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 피해자들의 서훈취소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들면서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운 거부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구체적인 판결 요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5.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서훈 취소대상자들로 인하여 자행되었던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이 규명되

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국가폭력에 희생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9. 7. 26. 행정안전부의 비공개처분의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결국 이번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유관 기관(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공개 판결을 한 이상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공개 절차로 나아가야 하며, 국가범죄에 책임이 있는 경찰청, 국가정보원이야 말로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행정안전부가 다시 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 11. 16.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별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위 법원이 (사)인권의학연구소의 청구를 인용한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정보에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에 관한 ‘소속/직급’만 기재되어 있고 서훈의 공적 내용에도 ‘간첩 000 또는 고정간첩단 검거 유공’ 등의 매우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용이나 직책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해당 서훈수여자가 당시 해당 직급으로 국정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당 사건에서 간첩 검거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 등을 추론해 낼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정보는 1970 ~ 1980년대에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부산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의 취소 경위, 그 취소대상자의 명단 및 취소사유에 관한 것인데, 해당 사건들의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 등을 통해, 대부분 이미 공개가 된 내용으로 불법구금에 이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피해내용 및 서훈 취소사유,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서훈 취소결정 과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3. 이 사건 서훈취소 대상자들이 대공업무에 종사하던 시기로부터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현재 이 사건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성명과 당시 소속, 계급 또는 직위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서훈취소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사유는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 내어 간첩조작을 하였다는 것이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람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명단에 자신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가해자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국가폭력 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또한 크다.

5. 이 사건 서훈취소 대상자들이 저지른 국가폭력 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비추어 볼 때,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성명과 그 취소사유에 대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으로 하여금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과정의 공공성·투명성·정당성을 검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고,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시 같은 유형의 국가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성명 및 그 취소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익 등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 사건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서훈 취소 대상 사건의 가해자 명단과 서훈의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제 피해자들의 서훈취소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들면서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운 거부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들이 주어진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권한과 아무런 관련 없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및 무고한 피해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가해 공무원들의 서훈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비

단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및 정의 실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문 피해자 개인 차원의 피해회복 조치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절차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유관 기관(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법부가 공개 판결을 한 이상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공개 절차로 나아가야 하며, 국가범죄에 책임이 있는 경찰청, 국가정보원이야말로 지금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일 행정안전부가 다시 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인권의학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서훈 취소대상자들로 인하여 자행되었던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국가폭력에 희생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